

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 
심 사 보 고 서

2023년 6월 9일  
행정재경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5월 31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5월 31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최 중  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3년 6월 9일)
 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행정안전국장 박은실)

### 가. 제안이유

- 직원의 편의증진 및 후생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를 확대하고, 후생복지사업의 근거를 추가 마련하여 직원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후생복지시설의 범위 확대
  - 1) 직원 편의시설에 매점, 커피판매점, 휴게실 추가(안 제6조 제1호)
  - 2) 직원 건강관리를 위한 복지시설에 심리상담실 추가(안 제6조 제2호)
- 후생복지사업 추가 및 신설
  - 1) 직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편익시설 등 지원 내용 추가(안 제7조 제4호)

- 2) 직원의 정신·신체적 건강 관리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(안 제7조 제1호 신설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후생복지시설의 범위를 확대 및 직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편익시설 지원 등을 후생복지사업 안에 포함하고 직원의 정신·신체적 건강 관리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